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17923
----------	-------

제안연월일 : 2026. 3.

제안자 : 보건복지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다음 5건의 법률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함.

건명	의안번호	발의자	발의일	전체회의 상정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412	이주영의원	2024.8.30.	2024.11.14.
	7809	이언주의원	2025.1.24.	2025.3.18.
	16400	김윤의원	2026.1.28.	2026.3.10.
	16425	박희승의원	2026.1.29.	2026.3.10.
	16427	한지아의원	2026.1.29.	2026.3.10.

나. 전진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7177호)을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2026년 3월 10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함.

다. 이상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의안번호	발의자	심사일정
3412	이주영의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4.11.19.),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8.19.),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6.3.11.)
7809	이언주의원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6.3.11.)
16400	김윤의원	
16425	박희승의원	
16427	한지아의원	
17177	전진숙의원	

라.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26.3.13.)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6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은 의료사고 피해의 신속한 구제와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제도 시행 10여 년이 지난 현재 필수의료 시스템의 붕괴 위기와 분쟁 조정 제도의 낮은 신뢰성이라는 심각한 한계에 직면해 있음.

특히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는 사고의 구조적 위험이 상존함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 사고에 대한 국가적 보상과 보호 체계가 미비함. 이로 인해 의료진이 형사 처벌과 고액 배상의 위험 때문에 현장을 이탈하고 방어 진료에 치중하는 등 국민의 생명권과 직결된 의료 공급 체계의 왜곡이 심화되고 있음. 또한,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와 의료인 간 소통의 부재와 조정절차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분쟁이 장기간 소송으로 비화되면서 당사자 모두에게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실정임.

이에 본 개정안은 환자의 권리 보장 및 의료사고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의료사고 설명의무를 명문화하고, 의료사고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하여 사고 이후 피해자와 그 가족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며 당사자 모두의 심리적 회복을 돕는 국가 차원의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함. 이와 함께 필수의료 의료진 보호 및 의료사고 형사절차 특례를 신설하여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통한 수사 절차 개선과 공소제한 및 반의사불벌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의료인이 안심하고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함. 아울러 공적 배상책임 체계 구축으로 불가항력 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신속한 피해 배상을 보장하며, 조정·감정 절차의 공정성 및 전문성 강화를 통해 조정 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획기적으로 제고함으로써 의료인과 환자가 상생할 수 있는 안전한 의료 환경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 가. “책임보험·책임공제,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중대한 과실” 등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의료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의료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2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2조의2, 제5조제5항 신설 등).
- 나.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및 보건의료인에게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의료사고의 내용 등을 충분히 설명할 의무를 부여하고,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등이 유감의 뜻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하되 그와 같은 유감의 표현은 민·형사상 책임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없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 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이사회 정원을 상임이사 및 환자·소비자 단체 추천 비상임 이사를 추가하여 11인으로 확대하고,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 라. 의료사고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환자 및 가족 등에게 심리상담·일상생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의료사

고트라우마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18조의2 신설).

마. 의료사고 분쟁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조정위원회 및 의료사고감정단의 위원 정원을 확대하고, 감정추천위원회의 추천 주체를 확대하고 의사결정 요건을 합리화하여 감정 및 조정 절차의 지연을 최소화하는 한편, 조정 피신청인의 무응답 시 조정에 응한 것으로 간주하고, 조정 자동개시 요건을 확대하며 의료사고심의 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조정절차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제23조 및 제25조 등).

바. 조정 자동개시 의료사고 등에 대한 조정신청의 경우 변호사 등이 의료분쟁 당사자의 의료분쟁 조정 관련 업무를 조력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의2 신설).

사. 의료사고 감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요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관련 진료과목을 담당하는 다수의 감정위원 또는 자문위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하고, 감정위원은 감정서 작성 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도록 함. 또한, 중대한 사실관계 변경이나 새로운 자료 제출이 있는 경우 재감정 및 추가감정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2, 제29조 등).

아.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조정·감정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분쟁조정제도 모니터링과 제도 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의료분쟁 조정·중재 ombudsman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 제46조 신설).

-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책임보험 관리 업무 위탁, 보험료 국가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47조 신설).
- 차. 현행법상 ‘분만(分娩)에 따른 불가항력 의료사고’로 한정되어 있는 보상 대상을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따른 불가항력 의료사고’로 확대하여 조정중재원이 의료사고 보상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제1항 등).
- 카.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폐지함(안 제47조 삭제 등)
- 타. 의료인이 최선의 진료를 다하였음에도 발생한 의료사고의 형사 입건에 대해 의료사고심의위원회에서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여부 등을 심의하여 수사기관에 심의기간 동안 출석요구 자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1조부터 53조까지 신설).
- 파. 의료사고로 업무상과실치상죄가 발생한 경우 설명의무를 이행하고 책임보험에 가입한 의료인에 대하여는 의료분쟁조정제도에 따른 조정 또는 법원 조정절차를 통해 합의가 성립한 때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반의사불벌 특례를 규정함(안 제54조).
- 하.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와 관련하여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발생한 경우 임의적 형 감면 규정을 두고, 아울러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전액을 지급하거나 의료사고 손해배상 책임보험을 통해 이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루어진 때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함. 다만, 중대한 의료 과실이 있는 경우, 책임보험 미가입 또는 설명의무 위반 시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안 제55조, 제56조 신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책임보험”이란 보건의료기관개설자와 「보험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의료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보험을 말한다.
8. “책임공제”란 보건의료기관개설자와 이 법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자가 의료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공제를 말한다.
9. “고위험 필수의료행위”란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2조의 필수의료 중 중증·소아·응급·분만·외상 등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지체 없이 의료적 개입이 필요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중대한 과실이 있는 의료행위의 정의) 이 법에서 “중대한 과

실이 있는 의료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과실이 인정되는 의료행위를 말한다. 다만, 제7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의료과실에 대해서는 환자의 사망 또는 중대한 신체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의료행위로 본다.

1. 「의료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한 경우. 다만, 「의료법」 제24조의2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동의를 받지 못하고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환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의료행위에 대하여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동의를 받지 아니한 경우. 다만, 「의료법」 제24조의2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동의를 받지 못하고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환자의 사망 또는 중대한 신체 손상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학적으로 예측 가능하였음에도 의학적으로 필요한 진단, 모니터링, 처치 또는 전원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환자의 사망 또는 중대한 신체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가 높은 의료행위에 필요한 기본적 안전관리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5. 수술 또는 시술 과정에서 의료기구 또는 이물질이 체내에 잔존시킨 경우

6. 의료행위를 전공의 또는 다른 보건의료인에게 지시한 후 감독을 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전공의 또는 다른 보건의료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지시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7. 의학적 진료지침 또는 통상적으로 수용되는 진료에서 현저히 벗어난 의료행위를 한 경우
8. 1회용 의료기구를 재사용하거나 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변질된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9. 다른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하거나 약품의 종류, 용량, 경로 또는 시기를 잘못 사용한 경우
10. 약제 투여 전 필수적인 과민반응조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11. 다른 환자에게 수혈하거나 혈액형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혈액 등 잘못된 혈액을 수혈한 경우
12. 다른 환자나 다른 부위를 수술한 경우

제5조제1항 중 “의료사고를 예방하기”를 “의료사고의 예방,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이하 “의료사고예방등”이라 한다)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이”를 “보건복지부령으로”으로, “의료사고의 예방”을 “의료사고예방등”으로, “설치·운영하는”을 “설치·운영하고 해당 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하는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의료사고예방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운영”을 “운영, 의료사고예방등에 관한 교육의 실시”로 한

다.

⑤ 국가는 제3항에 따른 의료사고예방등에 관한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장에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의료사고 설명의무 등) ①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또는 의료사고 당사자인 보건의료인(이하 “보건의료기관개설자등”이라 한다)은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환자 또는 보호자(이하 “환자등”이라 한다)에게 의료사고의 내용과 경위 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제27조제9항에 따른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의료사고 발생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보건의료기관개설자등이 환자등에게 의료사고의 내용, 경위, 사후조치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 설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5조제3항에 따른 의료사고예방위원회에 의료사고지원팀을 두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의료사고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건의료기관개설자등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 설명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보건의료기관개설자등이 행한 위로, 공감 또는 사고 발생 결과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표하는 유감의 의사표시는 민·형사상 재판에서 보건의료기

관개설자등의 책임에 대한 증거로 할 수 없다.

⑤ 제1항 단서에 따른 의료사고 설명의무 발생 시기, 의료사고 설명의 내용과 방식 및 제2항에 따른 의료사고지원팀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제4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의료사고 손해배상 관련 업무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8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4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의료사고 손해배상 관련 업무의 지원

제10조제1항 중 “9명”을 “1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그 밖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를 “의료분쟁의 조정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중임할 수 없다”를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③ 상임이사는 1명으로 하고, 공공기관의 경영 및 의료분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원장의 제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제11조제2항 중 “위원장이”를 “상임이사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원장·위원장이”를 “원장·상임이사가”로, “단장”을 “위원장, 단장”으로 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2장제1절에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의료사고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료사고트라우마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의료분쟁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당사자
2. 의료분쟁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제27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트라우마센터의 설치·운영 업무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른 국가트라우마센터 또는 조정중재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트라우마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제1항 본문 중 “300명”을 “50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정위원을”을 “9명의 추천위원으로 구성된 조정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조정위원을”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다음과 같이 후단을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조정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제26조제3항부터 제

5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상임 조정위원이 연임하는 경우에는 매년 조정위원추천위원회의 직무수행 평가를 받아야 한다.

제23조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의료행위등의 과실 유무 및 인과관계의 판단

제25조제2항 중 “100명 이상 300명 이내”를 “300명 이상 1000명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51조에 따른 의료사고심의위원회에서 의뢰한 의료사고에 대한 감정

제26조제3항제4호 중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 대학교육 또는 대학교수 관련 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에 단서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 전단 중 “전원”을 “과반수”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1항부터 제14항까지를 각각 제12항부터 제1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0항에 따른 상임 감정위원이 연임하는 경우에는 매년 추천위원회의 직무수행 평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7조제9항에 따른 의료사고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사고의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3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의료사고가 발생한 진료과목을 담당하는 상임 감정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조정중재원은 감정위원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9조에 따른 감정서 작성 기준과 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27조제8항 후단 중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원장은 조정신청을 각하한다”를 “불응하는 의사를 통지하면 원장은 조정신청을 각하하되, 해당 기간 내에 불응하는 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조정에 응한 것으로 본다”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제2호 중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중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를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 중”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따른 의료사고인 경우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당사자 조력) ① 조정중재원은 제27조제9항에 따른 의료사고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사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여금 의료분쟁의 당사자를 조력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1. 변호사

2. 법학 및 보건학 관련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의료분쟁 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3.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간호법」 제2조에 따른 간호사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분쟁 당사자 조력의 대상, 내용, 절차 및 조력자의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감정부는 제27조제9항에 따른 의료사고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사고에 대하여는 정확한 감정을 위하여 관련 진료과목을 담당하는 2명 이상의 감정위원 또는 자문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9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과실 및 인과관계 유무”를 “의료행위등의 적절성, 의료행위등과 결과 간의 관련성”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51조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심의가 먼저 개시된 경우에는 감정부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의료사고심의위원회의 감정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④ 감정위원은 제1항에 따른 감정서 작성 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0조제2항 중 “하고, 조정부는 조정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는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재감정을 요구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조정부는 중대한 사실관계 변경, 새로운 자료 제출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조정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정부에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재감정 또는 추가감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자(환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을 말한다), 보건의료기관, 보건의료인은 조정부에 재감정 또는 추가감정의 요구를 신청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른 재감정과 추가감정의 사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 제목을 “조정기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출석기일은”을 “조정부는 조정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정기일을 1회 이상 지정할 수 있고,”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조정부는 원활한 조정기일 운영을 위하여 조정준비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제5장(제47조 및 제48조)을 삭제하고, 제51조를 삭제하며, 제6장(제49조, 제50조 및 제52조)을 제7장(제57조부터 제59조까지)으로 하고, 제4장(제45조부터 제46조의2까지)을 제5장(제48조부터 제50조까지)으로 하며, 제3장에 제3절(제45조 및 제46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4장(제47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절 조정·중재 ombudsman 등

제45조(조정 및 감정 결과의 공개) ① 조정중재원장은 조정 또는 중재 절차 완료 후 의료분쟁의 조정, 중재 및 감정 결과를 성명 등 개인 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 조정중재원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정보 공개로 인하여 당사자가 특정될 수 있거나 당사자에 대한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정, 중재 및 감정 결과의 공개 방법과 절차,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6조(의료분쟁 조정·중재 ombudsman) ①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의 모니터링 및 개선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의료분쟁 조정·중재 ombudsman(이하 “ombudsman”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원장은 ombudsman의 업무처리와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ombudsman의 업무,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책임보험 및 책임공제 가입

제47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①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제2조제7호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같은조 제8호에 따른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 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하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의 범위, 책임보험등의 연간 배상한도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사고에 대한 적절한 책임보험등의 운영을 위하여 책임보험등의 약관, 손해평가 및 지급 기준 등을 관리·감독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의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국가는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따른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책임보험등의 보장범위를 넘어서는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등의 가입, 제3항에 따른 책임보험등의 관리·감독, 제4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 제5항 단서에 따른 보험료 지원 대상과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9조(종전의 제46조)제1항 중 “분만(分娩)에”를 “고위험 필수의료행

위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에 따른”을 “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대상이 되는 고위험 필수 의료행위의 유형,”으로 한다.

⑤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을 청구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보상금의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에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50조(종전의 제46조의2) 중 “제46조제1항”을 “제49조제1항”으로 한다.

제7장(제53조 및 제54조)을 제8장(제60조 및 제61조)으로 하고, 제6장(제51조부터 제56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제51조(의료사고심의위원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사고 관련 수사를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의료사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1.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따른 의료사고인지 여부
2. 중대한 과실이 있는 의료행위인지 여부
3. 제1호 및 제2호의 판단 기준에 관한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2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 위원은 의료사고나 의료분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의사전문의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경과하거나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 취득 후 6년 이상 경과한 사람 중 5명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소비자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 5명
3. 변호사 자격 취득 후 4년 이상 경과한 사람 중 5명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3명
5. 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 2명

④ 심의위원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원장의 제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다.

⑤ 심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심의위원장이 지정하는 심의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심의위원회 위원(제3항제4호에 따른 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⑦ 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⑧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 위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⑨ 심의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제2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정위원”은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조정부”는 “심의위원회”로 본다.

제52조(의료사고심의절차 등) ① 의료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보건의료인이 입건된 경우 시·도경찰청장, 지방검찰청 검사장과 해당 사건으로 입건된 보건의료인 또는 해당 사건의 환자등은 심의위원회에 해당 의료행위등이 고위험 필수 의료행위 및 중대한 과실이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보건의료인 또는 환자등이 심의를 신청한 경우 심의위원회는 해당 사건의 수사가 진행 중인 시·도경찰청장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보건의료인은 제1항에 따라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제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환자등에게 의료사고의 내용, 경위, 사후조치 등을 설명하였을 것

2. 해당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보험등에 가입한 상태일 것

③ 심의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시·도경찰청장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심의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제1항에 따라 심의를 신청하거나 신청 사실을 통보받은 시·도경찰청장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제3항에 따른 심의 기간 중에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따른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를 자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심의를 신청하거나 신청 사실을 통보받은 시·도경찰청장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해당 사건의 의료행위등의 과실 유무 및 인과관계의 규명을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감정서 등의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그 요청에 적극응하여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심의절차 완료 후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의료행위 여부 등의 결과를 성명 등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 공개로 인하여 당사자가 특정될 수 있거나 당사자에 대한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심의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자료의 요청) ① 심의위원장은 조정중재원,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방자치단체, 시·도경찰청장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 등 관계 기관에 대하여 제51조제1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4조(조정성립 등에 따른 피해자의 의사) 의료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보건의료인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47조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6조제3항에 따른 조정이 성립하거나 제37조제2항에 따라 조정절차 중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2. 제3장제2절에 따른 중재절차에서 「중재법」 제31조에 따른 화해중재판정서가 작성된 경우
3. 법원에서 「민사조정법」에 따라 조정이 성립하거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4. 「민사소송법」에 따라 화해가 성립하거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

된 경우

제55조(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의 감면)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따라 발생한 의료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보건의료인에 대하여 정상을 고려하여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조의2에 따른 중대한 과실이 있는 의료행위로 인한 경우
2. 제5조의2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환자등에게 의료사고의 내용, 경위, 사후조치 등을 설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7조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제56조(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특례)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따라 발생한 의료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보건의료인에 대하여는 해당 보건의료인 또는 의료사고 당시 해당 보건의료인을 고용한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피해자에게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상 금액을 말한다)을 지급하거나 해당 보건의료기관개설자등이 가입한 의료사고 손해배상 보험계약의 보험자가 손해배상금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조의2에 따른 중대한 과실이 있는 의료행위로 인한 경우

2. 제5조의2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환자등에게 의료사고의 내용, 경위, 사후조치 등을 설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7조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책임보험등의 관리와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설치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제3조(의료사고의 설명에 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의료사고부터 적용한다.

제4조(조정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조정위원회는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조정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손해배상금 대불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청구된 손해배상금 대불에 대해서는 제47조 및 제4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조정중재원은 이 법 시행 전에 청구된 손해배상금 대불에 대해서는 제7조제8호, 제8조제3호, 제47조 및 제4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신 설>

입이 필요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의2(중대한 과실이 있는 의료행위의 정의) 이 법에서 “중대한 과실이 있는 의료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과실이 인정되는 의료행위를 말한다. 다만, 제7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의료과실에 대해서는 환자의 사망 또는 중대한 신체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의료행위로 본다.

1. 「의료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한 경우. 다만, 「의료법」 제24조의2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동의를 받지 못하고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환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의료행위에 대하여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동의를 받지 아니한 경우. 다만, 「의료법」 제24조의2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동의를 받지 못하고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환자의 사망 또는 중대한 신체 손상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학적으로 예측 가능하였음에도 의학적으로 필요한 진단, 모니터링, 처치 또는 전원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환자의 사망 또는 중대한 신체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가 높은 의료행위에 필요한 기본적 안전관리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5. 수술 또는 시술 과정에서 의료기구 또는 이물질을 체내에 잔존시킨 경우

6. 의료행위를 전공의 또는 다른 보건의료인에게 지시한 후 감독을 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전공의 또는 다른 보건의

료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지시한 경우는 예
외로 한다.

7. 의학적 진료지침 또는 통상
적으로 수용되는 진료에서 현
저히 벗어난 의료행위를 한
경우

8. 1회용 의료기구를 재사용하
거나 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변질된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9. 다른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
여하거나 약품의 종류, 용량,
경로 또는 시기를 잘못 사용
한 경우

10. 약제 투여 전 필수적인
과민반응조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11. 다른 환자에게 수혈하거나
혈액형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혈액 등 잘못된 혈액을 수혈
한 경우

12. 다른 환자나 다른 부위를
수술한 경우

제5조(국가·보건의료기관개설자
및 보건의료인의 책무 등) ①
국가는 의료사고를 예방하기

제5조(국가·보건의료기관개설자
및 보건의료인의 책무 등) ①
-----의료사고

위하여 조사·연구, 통계 작성 및 공표, 교육 및 지침 개발 등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의료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의료사고예방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생략)

<신설>

⑤ 제3항에 따른 의료사고예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의 예방,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이하 “의료사고예방등”이라 한다)을-----

② (현행과 같음)

③ 보건복지부령으로-----의료사고예방등-----설치·운영하고 해당 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하는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의료사고예방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④ (현행과 같음)

⑤ 국가는 제3항에 따른 의료사고예방등에 관한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운영, 의료사고예방등에 관한 교육의 실시-----

<신 설>

제5조의2(의료사고 설명의무 등)

①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또는 의료사고 당사자인 보건의료인(이하 “보건의료기관개설자등”이라 한다)은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환자 또는 보호자(이하 “환자등”이라 한다)에게 의료사고의 내용과 경위 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제27조제9항에 따른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의료사고 발생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보건의료기관개설자등이 환자등에게 의료사고의 내용, 경위, 사후조치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 설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5조제3항에 따른 의료사고예방위원회에 의료사고지원팀을 두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의료사고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건의료기관개설자등에 대하여

제7조(정관) ① 조정중재원의 정
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 7. (생략)
8. 제47조에 따른 손해배상금
대불(代拂)에 관한 사항

9. ~ 13. (생략)
- ② (생략)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 설
명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보
건의료기관개설자등이 행한 위
로, 공감 또는 사고 발생 결과
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표하는
유감의 의사표시는 민·형사상
재판에서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등의 책임에 대한 증거로 할
수 없다.

⑤ 제1항 단서에 따른 의료사
고 설명의무 발생 시기, 의료사
고 설명의 내용과 방식 및 제2
항에 따른 의료사고지원팀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정관) ① -----

-----.

1. ~ 7. (현행과 같음)
8. 제4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의료사고 손해배상 관련
업무의 지원에 관한 사항
9. ~ 13.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업무) 조정중재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2. (생략)
- 3. 손해배상금 대불

- 4. 5. (생략)

제10조(임원 및 임기) ① 조정중
재원에 임원으로서 조정중재원
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
다), 제19조에 따른 의료분쟁조
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
장”이라 한다) 및 제25조에 따
른 의료사고감정단의 단장(이
하 “단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상임으로 하고, 그
밖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③ 원장은 의료분쟁의 조정 등
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
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
관이 임명한다.

제8조(업무) -----
-----.

- 1. 2. (현행과 같음)
- 3. 제4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에 따른 의료사고 손해배상
관련 업무의 지원

- 4. 5. (현행과 같음)

제10조(임원 및 임기) ① -----

11명 -----
-----.

② -----의료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하여 학식
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상임이사는 1명으로 하고,
공공기관의 경영 및 의료분쟁
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
한 사람 중에서 원장의 제청으
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④·⑤ (생략)

⑥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

제11조(임원의 직무) ① (생략)

②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생략)

④ 원장·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이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생략)

제14조(사무국) 조정중재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정중재원에 사무국을 둔다.

<신설>

④·⑤ (현행과 같음)

⑥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임원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 상임이사가 -----.

③ (현행과 같음)

④ 원장·상임이사가 -----
----- 위원장, 단장 -----
-----.

⑤ (현행과 같음)

<삭제>

제18조의2(의료사고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료사고트라우마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의료분쟁으로 정신적 피해를

조정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후단 신설>

1. ~ 4. (생략)

③·④ (생략)

⑤ 조정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⑥·⑦ (생략)

제23조(조정부) ① ~ ④ (생략)

⑤ 조정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신설>

2. ~ 4. (생략)

⑥ ~ ⑧ (생략)

--- 9명의 추천위원으로 구성된 조정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조정위원을 -----
----- . 조정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제2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1. ~ 4.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⑤ -----
----- .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상임 조정위원이 연임하는 경우에는 매년 조정위원추천위원회의 직무수행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⑥·⑦ (현행과 같음)

제23조(조정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1. (현행과 같음)

2. 의료행위등의 과실 유무 및 인과관계의 판단

3. ~ 5. (현행 제2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25조(의료사고감정단의 설치)

- ① (생략)
- ② 감정단은 단장 및 100명 이상 300명 이내의 감정위원으로 구성하고, 단장은 비상임으로서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원장의 제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다.
- ③ 감정단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생략)
 - 2. 의료행위등을 둘러싼 과실 유무 및 인과관계의 규명
 - 3. (생략)
 - <신설>
 - 4. (생략)
- ④ (생략)

제26조(감정부) ①·② (생략)

- ③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

제25조(의료사고감정단의 설치)

- ① (현행과 같음)
- ② -----300명 이상 1000명 이내-----
- ③ -----
- 1. (현행과 같음)
- 2. 의학적 근거에 따른 의료행위 등의 적절성 및 의료행위등과 결과 간의 관련성 규명
- 3. (현행과 같음)
- 4. 제51조에 따른 의료사고심의 위원회에서 의뢰한 의료사고에 대한 감정
- 5. (현행 제4호와 같음)
- ④ (현행과 같음)

제26조(감정부) ①·② (현행과 같음)

- ③ -----

람은 3명으로 하고,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2명으로 한다.

1. ~ 3. (생략)
4.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추천한 사람(보건의료인은 제외한다)

④·⑤ (생략)
⑥ 감정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⑦ 각 감정부에 두는 감정위원의 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서 신설>

1. ~ 3. (생략)

--.

1. ~ 3. (현행과 같음)
4.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 대학교육 또는 대학교수 관련 단체-----

④·⑤ (현행과 같음)
⑥ -----
-----.다만, 제10항에 따른 상임 감정위원이 연임하는 경우에는 매년 추천위원회의 직무수행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⑦ -----

다만, 제27조제9항에 따른 의료사고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사고의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3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1. ~ 3. (현행과 같음)

⑧ 감정부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제7항 각 호에 따른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출석하여야 한다.

⑨ (생략)

⑩ 감정부에 1명 이상의 상임 감정위원을 둔다. <단서 신설>

<신설>

⑪ ~ ⑭ (생략)

제27조(조정 신청) ① ~ ⑦ (생략)

⑧ 제4항에 따라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조정중재원에 통지함으로써 조정절차를 개시한다.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

⑧ -----
-----과반수-----

⑨ (현행과 같음)

⑩ -----
-----다만, 의료사고가 발생한 진료과목을 담당하는 상임 감정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⑪ 조정중재원은 감정위원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9조에 따른 감정서 작성 기준과 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⑫ ~ ⑮ (현행 제11항부터 제14항까지와 같음)

제27조(조정 신청)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

일 이내에 조정절차에 응하고
자 하는 의사를 통지하지 아니
한 경우 원장은 조정신청을 각
하한다.

⑨ 원장은 제8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의 대상
인 의료사고가 사망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
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여
야 한다. 이 경우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을
조정절차 개시일로 본다.

1. (생략)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중중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신설>

⑩ ~ ⑮ (생략)

<신설>

----- 불응하는
의사를 통지하면 원장은 조정
신청을 각하하되, 해당 기간 내
에 불응하는 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조정에 응한 것으
로 본다.

⑨ -----

1. (현행과 같음)
2. -----제2조제2
항에 따른 장애 중-----

3.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따른
의료사고인 경우

⑩ ~ ⑮ (현행과 같음)

제27조의2(당사자 조력) ① 조정
중재원은 제27조제9항에 따른
의료사고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사고에 대하여 다

제28조의2(감정위원 등의 의견
청취) (생략)

<신설>

제29조(감정서) ① 감정부는 조정

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여금
의료분쟁의 당사자를 조력하도
록 지원할 수 있다.

1. 변호사

2. 법학 및 보건학 관련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으로서 2년 이상 의료분쟁 관
련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3.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
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간
호법」 제2조에 따른 간호사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분쟁 당
사자 조력의 대상, 내용, 절차
및 조력자의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2(감정위원 등의 의견
청취)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
과 같음)

② 감정부는 제27조제9항에 따
른 의료사고 등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하는 의료사고에 대하
여는 정확한 감정을 위하여 관
련 진료과목을 담당하는 2명
이상의 감정위원 또는 자문위
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9조(감정서) ① -----

원에 속하지 아니한 보건의료인에게 자문할 수 있다.

<신 설>

제31조(출석기일) ① 출석기일은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생략)

<신 설>

<신 설>

<신 설>

-----.

⑥ 제3항에 따른 재감정과 추가 감정의 사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조정기일) ① 조정부는 조정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정기일을 1회 이상 지정할 수 있고, -----
-----.

② (현행과 같음)

③ 조 정부는 원활한 조정기일 운영을 위하여 조정준비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제3절 조정·중재 읍부즈만 등
제45조(조정 및 감정 결과의 공개)

① 조정중재원장은 조정 또는 중재 절차 완료 후 의료분쟁의 조정, 중재 및 감정 결과를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 조정중재원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정보 공개로 인하여 당사자가 특정될 수 있거나 당사자에

<신 설>

<신 설>

<신 설>

대한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정, 중재 및 감정 결과의 공개 방법과 절차,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6조(의료분쟁 조정·중재 ombudsman) ①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의 모니터링 및 개선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의료분쟁 조정·중재 ombudsman(이하 “ombudsman”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원장은 ombudsman의 업무처리와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ombudsman의 업무,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책임보험 및 책임공제 가입

제47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①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제2조제7호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하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의 범위, 책임보험등의 연간 배상한도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사고에 대한 적절한 책임보험등의 운영을 위하여 책임보험등의 약관, 손해평가 및 지급 기준 등을 관리·감독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의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국가는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따른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책임보험등의 보장범위를 넘어서는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예산

불구하고 그에 따른 금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 미지급금에 대하여 조정중재원에 대불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국내 법원에서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한정한다.

1. 조정이 성립되거나 중재판정이 내려진 경우 또는 제37조제1항에 따라 조정절차 중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2. 「소비자기본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3. 법원이 의료분쟁에 관한 민사절차에서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보건의료인, 그 밖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집행권을 작성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대불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대불비용”이라 한다)을 충당하기 위한 재원은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분쟁 발생현황, 대불제도 이용실적,

예상 대불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건의료기관개설자별로 부담
하여야 하는 대불비용 부담액을
산정·부과·징수하며, 보건의
료기관개설자별 대불비용 부담
액의 산정과 납부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보건의료기관개설자별 대
불비용 부담액의 산정·부과·
징수 업무를 조정중재원에 위탁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중재원
은 손해배상금 대불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국
민건강보험법」 제47조제3항에
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조정중
재원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
공단은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조정중재원에 지급하여야 한다.

⑥ 조정중재원은 제1항에 따른 대불청구가 있는 때에는 손해배상 의무가 있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이하 이 조에서 “손해배상의무자”라 한다)의 대불금 상환 가능성, 상환 예상액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대불하여야 한다.

⑦ 조정중재원은 제6항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대불한 경우 손해배상의무자에게 그 대불금을 구상할 수 있다.

⑧ 조정중재원은 제7항에 따라 대불금을 구상함에 있어서 상환이 불가능한 대불금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⑨ 제6항에 따른 손해배상금 대불의 대상·범위·절차 및 방법, 제7항에 따른 구상의 절차 및 방법, 제8항에 따른 상환이 불가능한 대불금의 범위 및 결손처분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자료의 제공) ① 원장은 제47조제7항에 따른 구상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결손처분을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 기관에 국세·지방세, 토지·주택·건축물·자동차·선박·항공기,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보훈급여·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별정우체국연금·기초연금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신 설>

<삭 제>

제6장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제51조(의료사고심의위원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사고 관련 수사를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의료사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

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1.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따른
의료사고인지 여부

2. 중대한 과실이 있는 의료행
위인지 여부

3. 제1호 및 제2호의 판단 기준
에 관한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20명의 위원으로 구
성한다.

③ 심의위원회 위원은 의료사
고나 의료분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건복
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다.

1. 의사전문의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경과하거나 치과의사 또
는 한의사 면허 취득 후 6년
이상 경과한 사람 중 5명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소비자단체 등에서 추천
하는 사람 중 5명

3. 변호사 자격 취득 후 4년 이

상 경과한 사람 중 5명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3명

5. 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 2명

④ 심의위원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원장의 제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다.

⑤ 심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심의위원장이 지정하는 심의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심의위원회 위원(제3항제4호에 따른 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⑦ 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⑧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 위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신 설>

있다.

⑨ 심의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제2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정위원”은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조정부”는 “심의위원회”로 본다.

제52조(의료사고심의절차 등) ①
의료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보건의료인이 입건된 경우 시·도경찰청장, 지방검찰청 검사장과 해당 사건으로 입건된 보건의료인 또는 해당 사건의 환자등은 심의위원회에 해당 의료행위등이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및 중대한 과실이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보건의료인 또는 환자등이 심의를 신청한 경우 심의위원회는 해당 사건의 수사가 진행 중인 시·도경찰청장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보건의료인은 제1항에 따라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제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환자등에게 의료사고의 내용, 경위, 사후조치 등을 설명하였을 것

2. 해당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 보험등에 가입한 상태일 것

③ 심의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시·도경찰청장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심의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제1항에 따라 심의를 신청하거나 신청 사실을 통보받은 시·도경찰청장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제3항에 따른 심의 기간 중에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따른 피의

자에 대한 출석요구를 자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심의를 신청하거나 신청 사실을 통보받은 시·도경찰청장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해당 사건의 의료행위등의 과실 유무 및 인과관계의 규명을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감정서 등의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그 요청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심의절차 완료 후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의료행위 여부 등의 결과를 성명 등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 공개로 인하여 당사자가 특정될 수 있거나 당사자에 대한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심의절차에 필요한

<신 설>

<신 설>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자료의 요청) ① 심의위원장은 조정중재원,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방자치단체, 시·도경찰청장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 등 관계 기관에 대하여 제51조제1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4조(조정성립 등에 따른 피해자의 의사) 의료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보건의료인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47조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6조제3항에 따른 조정이 성립하거나 제37조제2항에 따라 조정절차 중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2. 제3장제2절에 따른 중재절차에서 「중재법」 제31조에 따른 화해중재판정서가 작성된 경우

3. 법원에서 「민사조정법」에 따라 조정이 성립하거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4. 「민사소송법」에 따라 화해가 성립하거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

<신 설>

제55조(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의 감면)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따라 발생한 의료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보건 의료인에 대하여 정상을 고려하여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조의2에 따른 중대한 과실

<신 설>

이 있는 의료행위로 인한 경우
2. 제5조의2제1항 단서에도 불
구하고 환자등에게 의료사고
의 내용, 경위, 사후조치 등을
설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7조제1항에 따른 책임보
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제56조(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
한 특례)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에 따라 발생한 의료사고로 인
하여 「형법」 제268조의 업무
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보건의
료인에 대하여는 해당 보건의료
인 또는 의료사고 당시 해당 보
건의료인을 고용한 보건의료기
관개설자가 피해자에게 의료사
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확
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
는 집행권원상 금액을 말한다)
을 지급하거나 해당 보건의료기
관개설자등이 가입한 의료사고
손해배상 보험계약의 보험자가
손해배상금 전액에 상당하는 금
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조의2에 따른 중대한 과실이 있는 의료행위로 인한 경우
2. 제5조의2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환자등에게 의료사고의 내용, 경위, 사후조치 등을 설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7조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제6장 보칙

제49조(송달) (생략)

제50조(조정비용 등) (생략)

제51조(조정성립 등에 따른 피해자의 의사) ① 의료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보건의료인에 대하여는 제36조제3항에 따른 조정이 성립하거나 제37조제2항에 따라 조정절차 중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가 신체의

제7장 보칙

제57조(송달) (현행 제49조와 같음)

제58조(조정비용 등) (현행 제50조와 같음)

<삭제>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장애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3장제2절에 따른 중재절차에서 「중재법」 제31조에 따른 화해중재판정서가 작성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5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생략)

제7장 벌칙

제53조(벌칙) (생략)

제54조(과태료) (생략)

제5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현행 제52조와 같음)

제8장 벌칙

제60조(벌칙) (현행 제53조와 같음)

제61조(과태료) (현행 제54조와 같음)